

4) 1992, 9, 9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우리측 : 국제협력과장, 담당사무관
- 미 측 : 인사처장, 인사과장, 노동고문

(2) 회의내용

- ① 92. 7. 23 합동위원회가 노무분과위에 위임한 과제에 대한 주한미군측 보고서 검토 : 한인근로자 우선채용권과 미군·군속가족 취업문제
- ② SOFA 특별위원회 청원 심사를 위한 위원 선임 문제

5) 1994, 4, 28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우리측 : 노동부 국제협력과장, 법무담당관, 근로기준과장, 국제협력과 담당사무관,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 미 측 : 민간인 인사처장, 인사과장, 노동고문

(2) 회의내용

- ① 한국인 우선고용을 규정한 SOFA 17조 논의
- ② 한국인 우선고용 관련 합의각서안(MOA) 검토

6) 1998, 1. 30일자 회의

(1) 참석인원

- 우리측 : 노동부 국제협력과장, 담당사무관, 근로감독관, 고용보험 운영과 사무관
- 미 측 : 미군인사처장, 노동고문

(2) 회의내용

- ① 주한미군측이 제시한 고용보험 가입절차 합의 및 서명식
- ② 한국인 근로자들의 향후 처우 개선방향 논의

7) 현재 노무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이재갑 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간 사 : 최성요 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2) 미 측

- 위원장 : P Murphy 주한미군 인사처 민간인 인사과장
- 간 사 : R Brown 주한미군 인사처 민간인 인사과 부과장

6. SOFA 교통분과위원회 구성·인원

1) 현재 교통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 원 장 : 건설교통부 육성교통국 자동차관리 대장
- 교체위원장 :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정책과장
- 위 원 : 외무부 미주국 북미3과장, 해양수산부 해운선박국 표지과장,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측량과장, 경찰청 교통지도국, 철도청운수국 화물과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과장,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군사계획처장,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수송과장
- 간 사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 국제담당

(2) 미국측

- 위원장 : 주한미군 군수처(미육군)
- 위 원 : 주한미공군 공수사령부 기지부 사령관, 주한미공군 오상공
군기지 주한미군사령부 3지역 헌병대장(미육군), 주한미군
법무실 주한미군 인사참모부 교육과장, 미8군 항공차장(미
육군), 주한미군 헌병대 미공군
- 간 사 : 주한미군 부사령관실 국제 관계담당(미공군)

2) 위원회 개최 자료 - 관계부처 미제출

7. 면세물품 불법거래 분과위원회

1) 1974. 5. 6일자 회의

- (1) 참석자 : 분과위원
- (2) 회의내용 : 면세물품 부정거래 단속분과위원회 설립

2) 1974. 6. 28일자 회의

- (1) 참석자 : 분과의원
- (2) 회의 내용 : 한미 합동 단속반의 재정비

3) 1974. 8. 13일자 회의

- (1) 참석자 : 분과의원
- (2) 회의내용 : 한미합동 단속반 운영지침의 90일간 시험

4) 1974. 12. 10일자 회의

- (1) 참석자 : 분과위원
- (2) 회의일자 : 한미합동 단속반 운영지침의 시험기간 연장

5) 1975. 5. 19일자 회의

- (1) 참석자 : 분과위원
- (2) 회의내용 : 주한미군 및 SOFA대상자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반입된 물
품의 암거래 감소 및 한미친선 이해 증진에 관한 건의

6) 1975. 7. 21일자 회의

- (1) 참석자 : 분과위원
- (2) 회의내용 : 1975. 5. 19 건의안 수정

7) 1975. 12. 4일자 회의

- (1) 참석자 : 분과위원
- (2) 회의내용 : 물품 구매 통제 강화를 위한 개정

8) 1977. 6. 9일자 회의

- (1) 참석자 : 분과위원
- (2) 회의내용 : 1975. 5. 19 건의안 검토

9) 1977. 6. 20일자 회의

- (1) 참석자 : 분과위원
- (2) 회의내용 : 1975. 5. 19 건의안 폐지

10) 1986. 5. 15일자 회의

- (1) 참석자 : 분과위원
- (2) 회의내용 : 구매통제 제도 검토

11) 1985. 9. 5일자 회의

- (1) 참석자 : 분과위원

(2) 회의내용 : 면세물품 불법거래에 대한 특별 합동위원회

12) 1989. 10. 18일자 회의

(1) 참석자 : 분과위원

(2) 회의내용 : 외국물품 거래 사무소를 통해 판매된 면세물품 관세율에 관한 검토

13) 현재 면세물품불법거래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손정준 관세청 특수조사과장

- 간 사 : 손웅기 관세청 특수조사과 사무관

(2) 미 측

- 위원장 : T Lorimer 주한미군 인사참모(대령)

- 간 사 : T Dorsey 주한미군 인사참모실 자료관리과장(중령)

8. 출입분과위원회

1) 1995. 2. 17일자 회의

(1) 참석자

① 우리측

- 위원장 : 최의정(법무부 체류심사과정)

- 참석자 : 원형규(법무부 체류심사과 사무관), 김두옥(법무부 입국심사사과 사무관, 조 현 (법무부 체류심사과 주사), 조 현 (법무부 체류심사과 주사)

② 미 측

- 위원장 : Tomas w. Ellers(미군대령)

- 참석자 : Duane Snow, John Robinson, Don A. Timm, Malcom H.

Perkins, Joe Cothron

(2) 회의내용

- 미국측에서 군용함으로 출입하는 주한미군의 출입현황 통보를 출입국 신고서 제출로 대체하자는 제안(전산자료로 주한미군의 출입국현황 파악이 가능하므로 미국측의 제안을 수용함.)

(3) 회의 장소 : 용산 미8군 사우스 하텔하우스(THE HARTELL HOUSE)

2) 현재 출입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김남일 법무부 체류심사과장

- 간 사 : 황의소 법무부 체류심사과 사무관

(2) 미 측

- 위원장 : T Lorimer 주한미군 인사참모(대령)

- 간 사 : B Lewis 미8군 인사참모실 교육과장(소령)

9. 시설·구역분과위원회

1) 현재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박충신 국방부 관재보상과장

- 간 사 : 이동근 국방부 관재보상과(중령)

(2) 미 측

- 위 원 장 : D Kingston 주한미군 공병참모(대령)

- 교체위원장 : K D' Amanda 주한미군 공병참모실(중령)
- 간 사 : M Cung 주한미군 공병참모실 직원
- 부 간 사 : Kim, Cung Song 주한미군 공병참모실 직원

2) 개최 현황 : 자료 미제출

10.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1) 1차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회의

(1) 일 시 : 1993. 4. 28

(2) 참석자

- ① 우리측 : 검찰 제4과장 조창구, 검찰 제4과 검사 서우정
- ② 미국측 : 미8군 법무감 해밀튼 대령, 김현수 고문변화사

(3) 회의내용

- 한미합동위원회에서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에 과제로 부여한 '증인대면권 보장' 방안에 관해 양측이 협의하여 그 결과를 문안으로 작성, 한미 합동위원회에 제출기로 함.

※ 참고사항 : 위 회의 결과에 따라 추후 작성, 제출된 '증인 대면권' 관련 문안이 1994. 6. 16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 20호'로 채택됨.

(4) 회의장소 : 법무부 검찰 제4과장실

2) 현재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이인규 법무부 장관 검찰4과장
- 간 사 : 백기봉 법무부 검찰4과 검사
- 위 원 : 박군택 법무부 검찰국 검찰1과 검사, 김용화 경찰청 형사국 형사과장, 임복재 법무부 교정국 교정과장, 박성우 관세청 조사감시국 특수조사과장, 배한진 외무부 북미3과 사무관

(2) 미 측

- 위원장 : (일반) J. Ley 주한미군 법무감 (대령)
(보안 및 법 집행) T Lamb 주한미군 헌병감(대령)
- 간 사 : (일반) Hyun S. Kim 주한미군 법무감실 변호사
(보안 및 법 집행) D Briar 주한미군 헌병감실(소령)

11. 상무분과위원회

1) 1997. 7. 8일자 회의

(1) 참석자

- ① 우리측 :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장
- ② 미 측 : 주한미육군 계약사령부 사령관

(2) 회의내용

- 미군부대 영내 대학교의 한국인 학생 등록가능여부 협의

2) 1997. 7. 16일자 회의

(1) 참석자

- ① 우리측 :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장
- ② 미 측 : 주한미육군 계약사령부 사령관

(2) 회의내용

- 미군부대 영내 대학교 한국인 학생 등록가능여부 협의

3) 1998. 5. 21일자 회의

(1) 참석자

- ① 우리측 :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장
- ② 미 측 : 주한미육군 계약사령부 사령관

(2) 회의내용

- 미군부대 영내 대학교의 한국인 학생 등록금지 : 주한미군 고용원, KATUSA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국인 학생의 미군영내 대학교 등록을 금지키로 합의

4) 2000. 10. 18일자 회의

(1) 참석자

- ① 우리측 :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장
- ② 미 측 : 주한미육군 계약사령부 사령관

(2) 회의내용

- 기술대표(Technical Representative) 지위로 한국에 입국한 미국인을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 지위로 변경하는 여부 협의

5) 현재 상무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김동선 산자부 미주협력과장

- 간 사 : 박정선 산자부 미주협력과 사무관

(2) 미 측

- 위원장 : R Moran 미 육군 계약사령부 획득관리감(대령)
- 간 사 : K Story 주한미군 획득관리부 참모(소령)

12. 공공용역분과위원회

1) 현재 공공용역분과위원회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오동환 재경부 물가정책과장
- 간 사 : 이대희 재경부 물가정책과 사무관

(2) 미 측

- 위원장 : T Alguire 미8군 공병참모(대령)
- 간 사 : J Burtch 주한미군 공병참모실 공사과 직원

2) 개최 현황 : 자료 미제출

13. 군민관계분과위원회(임시)

1) 현재 군민관계분과위원회(임시)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송봉현 외교부 북미3과장
- 간 사 : 신현석 외교부 북미3과 주사보

(2) 미 측

- 위원장 : S Taylor 주한미군 공보관(대령)
- 간 사 : George D. Kim 주한미군 공보관실 지역 관계 과장

2) 개최 현황 : 자료 미제출

14. 방역분과위원회(임시)

1) 현재 방역분과위원회(임시) 구성

(1) 우리측

- 위원장 : 이종구 보건복지부 방역과장
- 간 사 : 최철호 보건복지부 방역관 사무관

(2) 미 측

- 위원장 : T Lorimer 주한미군 인사참모(대령)
- 간 사 : M Shatek 미8군 인사참모실 건강프로그램 계획과 직원

2) 개최 현황 : 자료 미제출

제6장

SOFA관련 주요사건 및 문제

제1절 매향리 문제

제2절 미군의 독극물 한국 무단 방출사건

제3절 미군의 수익 사업

제1절 매항리 문제

1. 개요

매항리 미공군사격장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항리 일대의 연안 해역과 해안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사격장은 총면적 7백28만 평으로 약 6백90만 평에 달하는 해상사격장과 해안지역에 설치된 38만 평 규모의 육지사격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매항리에 사격장이 조성된 것은 한국전쟁중이던 1951년, 미군폭격기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매항리 앞 해안으로부터 1.6km 가량 떨어진 바다 위의 농섬을 해상 표적으로 삼아 사격을 시작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후 1954년부터 미군이 사격장 지역에 주둔하기 시작하였고, 한미 SOFA 발효 후인 1968년에 이르러 농섬을 중심으로 반경 3천 피트 구역과 이에 접속한 해안지역 38만 평이 징발되었으며, 1979년에는 농섬을 중심으로 반경 8천 피트까지 연안해역을 추가 징발하여 5백만 평의 바다사격장이 확보되었고, 이후 계속된 징발로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밖에 매항리 사격장에 관련된 기초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격장은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한국 주둔 제7공군 51전투비행단에 소속되어 있다.

들째, 훈련에 참가하는 전폭기는 F4E, A-10, F16, OV-10, 공격용 헬기 등 5종의 신예 전투기가 포함된다.

셋째, 사격훈련의 종류는 로켓포사격, 기관포사격, 기총사격, 레이저포사격이 포함되고, 연중 5,6회에 걸쳐 원폭투하 훈련이 실시된다.

넷째, 사격훈련은 연중 계속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연간 약 2백 50일에 걸쳐 시행한다. 연습은 1일 평균 11.5시간 동안 편대별로 15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행해지고 사격회수는 1일 6백회 내지 7백회에 달한다. 격주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훈련과 주간 및 야간훈련이 실시되고, 주간훈련의 경우에는 09:00부터 훈련이 시작되고, 야간훈련이 있는 날은 통상 12:30부터 23:00까지 사격연습이 계속된다. 팀 스피리트 훈련 등 연중 4,5회의 특별한 훈련기간 중에는 24시간 계속하여 사격연습이 행해진다.

훈련이 없는 시간에만 제한적이거나 사격장 내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나가 일할 수 있다.

- 사격훈련의 내용은 기관포와 기총사격 등의 경우 실탄사격과 행해탄의 사격이 병행된다. 그 밖에 원폭투하연습은 모의탄에 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매회 30발 가량의 투하연습이 이루어진다. 야간사격의 경우는 연습시간중 조명탄이 사용된다.

- 사격훈련에 참가하는 부대는 한국 내의 미 7공군 소속 전폭기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의 오키나와 공군기지, 태국 및 괌도에 주둔하는 미공군기지, 그리고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진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서부터 발진하는 전폭기까지 장거리폭격훈련에 참가했다. 그 밖에 미 태평양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으로부터 발진하는 전폭기들 역시 장거리 폭격훈련에 참가한다.

2. 피해상황

매항리 사격장으로 인해 직접적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매항 1,2,3리, 이화 1,2,4리, 석천 3,4리 등 8개 마을로서, 그 주민은 7백13가구 4천여

명에 달한다.

직접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차적으로는 연중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폭사고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경제적 손실 또한 심각하다. 직접 피해지역 주민들은 사격장 조성 당시 5백만 평 연안의 황금어장과 50만 평의 농경지 및 임야를 헐값에 징발당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들은 해안지역 거주민들로서 징발 전까지 어패류 채취업과 해태 양식업 등 어업과 농업을 겸한 경제활동에 생계유지의 수단을 두고 있었으며, 어업의 비중은 8할 정도이다. 따라서 연안해역 5백만 평이 사격장에 징발된 결과 주민들의 생업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었을 것인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3. 피해 사례

1) 오폭사고

이곳에서 폭격연습이 얼마나 심하게 진행되는지는 농섬과 함께 해상 표적으로 지정된 구비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현재 구비섬은 실전형 대형 폭탄의 계속된 폭격으로 거의 뭉개져 없어져 버린 상태다. 구비섬은 지도에만 나오는 '유령섬'이 된 것이다. 섬 하나가 아예 날아갈 정도의 폭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오폭사고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951년 미군의 사격연습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오폭사고와 불발탄으로 인한 폭발사고 등은 종종 발생하여 왔으나 1989년과 1995년에 소액의 배상이 실시되었을 뿐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격장 설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폭으로 인하여 직접 사망한 주민은 3명, 불발탄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 주민은 9명으로서 사상자는 12명에 이르고, 오폭으로 상해를 입은 주민은 15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일지]

- 1952년 주민 전상록씨가 산에서 땀감을 구하여 귀가하다 마을에 오폭 투하된 폭탄에 머리를 맞아 즉사함
- 1952년 이봉우, 이상복 부자가 바다 조업중 오폭에 손목 절단 등 부상
- 1956년 주민 김윤식씨의 두 아들 등 어린이 5명이 불발탄을 주워 가지고 놀던 중 폭발하여 4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은 발목에 중상
- 1960년 주민 1명 불발탄 폭발사고로 사망
- 1961년 주민 1명 고철 수집중 불발탄 폭발로 사망.
- 1962년 의지인 2명, 사격연습을 구경하던 중 포탄 파편에 사망
- 1963년 주민 이철중씨 연습탄 파편에 의해 옆구리 부상
- 1965년 주민 김현복씨가 마을로 오폭된 기총사격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
주민 백화련씨 연습탄 파편에 옆구리 부상
주민 이철중씨 연습탄에 의해 옆구리 부상
- 1966년 주민 최대식씨 불발탄에 의해 엄지손가락 잘려 나감
- 1967년 주민 이영자씨(당시 33세)가 만삭의 몸으로 폭격장 인근 해안에서 글을 취하던중 투하된 폭탄에 명주되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으나 미군폭격장 책임자는 망인의 남편인 한장수씨를 폭격장 내 중립원으로 채용하여 이를 무마하였음
- 1968년 4월 지역주민 김윤석씨의 두 아들 어린이 5명이 불발탄을 주워가지고 놀던 중 폭발하여 그 중 4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1명은 발목에 중상 입음.
- 1973년 주민 김이본씨 불발탄에 의하여 옆구리 중상, 미군헬기로 긴급 후송수술.
- 1989년 2월 주민 최중복씨가 마을을 지나가던 중 오폭 투하된 연습용 포탄이 머리 위 수십 센티미터 부근을 지나 옆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져 뇌진탕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
- 1989년 어민 손달근씨가 바다 폭격장 외각선으로부터 4.5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헬리콥터가 발사한 기관총알에 오른 쪽 발목을 관통 당하는 중상을 입었음.(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 재판을 통하여 상 처음으로 7천5백만원의 피해배상을 받음.)
- 1995년 다량의 불발탄을 폭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발 진동으로 수

백 가구 주택의 지붕과 벽이 내려앉고 균열이 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손해 배상을 받았으나 많은 피해 주민들이 무지하여 손해 배상 청구가 누락되었음

1996년 미공군의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탄환이 주민 백신기씨택 주택의 창문을 뚫고 방안으로 오폭되어 백신기씨의 모 강옥순씨가 총격으로 병원의 진료를 받음.

2000년 5월 8일 미공군기가 폭격연습 중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여 적재하고 있던 실전용 폭탄을 농섬 폭격장과 마을 사이에 투하. 이 사고로 주민 7명이 부상하고 수백 채의 농가 유리창이 깨짐.

2) 소음피해

직접 피해지역은 육지사격장의 외곽에 설치된 철조망과 접속된 주거지역으로부터 사격장에서 4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 및 어촌 지역이다.

사격장의 동쪽에 위치한 매항 2리의 경우에는 사격표적을 향하여 내륙으로부터 해안방향으로 급강하는 전폭기가 마을의 중앙 상공을 통과하여 저공비행을 하므로, 전폭기의 비행폭음으로 주택의 지붕과 벽이, 심하게 흔들리는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전폭기의 엔진 폭음, 기관포 사격 및 기총사격이 행해지는 순간에는 사격장 주변의 직접 피해 지역인 주거지역에서는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굉음으로 인하여 집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다. 또한, 야간 사격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소음 및 포성과 조명탄의 불빛으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 심한 안면방해를 겪고 있다.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미군 당국이 직접 실시한 소음도 조상에 의하면 사격장 인근 지역의 평균 소음도는 90 내지 110 WECPNL(국제민간 항공기구 소음규제 권고치)에 달하며, 이러한 소음지역은 주거불능지역으로서 녹지대 등 완충지대를 조성해야 하는 지역에 속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가 1989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수 차례의 매항리지역 답사와 역학조사 결과 발표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인근 주민의 35.3%가 소음성 난청에 걸려 있으며, 대조지역과 비교하여 소음피해와 연관이 깊은 고열합환자 발생률 또한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 밖에도 사격장 인근주민의 8할 이상이 이명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심계의 이상향진과 정서불안, 현기증 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와 같이 연속되는 극심한 소음은 그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주민들의 성격이 포악해지고 자살율이 매우 높으며, 유아들의 경기 원인이 되고, 소년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문제소년들을 다량 배출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다.

3) 경제적 피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사격장 조성을 위하여 5백만 평의 연안 황금어장과 50만 평의 농경지 및 임야를 헐값에 징발당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 후 어장 상실로 인한 어획량의 격감과 경지면적의 축소에 따른 농업소득의 감소로 만성적인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1968년 징발 당시 주민들은 사격장 지역으로 편입된 연안어장에서 연평균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당시 어업권에 대한 징발보상가액은 총액 1천만원에 불과했다. 농경지의 경우에도 당시 평당 5백원 내지 6백원의 농경지가 평당 1백80원 내지 2백30원의 헐값에 징발당했다. 당시 시가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 후 정부당국은 사격장 내의 외곽 유휴지에 대한 출입영농을 허용하여 8만8천 평의 논과 1만3천 평의 밭을 포함하여 10만여 평의 경작지에 대해 연간 평당 1백5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주민들에게 임대 경작시키고 있다. 농민들은 사격이 없는 시간에만 기지 안으로 들어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농지임대를 관장하는 지방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일부 지방공무원 등의 농간으로 실제 농민들이 직접 임차 경작하는 농지는 전체 임대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 또는 비농민 등이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리경작을 시키거나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968년 징발당하기 전까지 화성군 내에서 가장 부촌에 속했던 매향리는, 지금은 가구당 연평균 수입이 3백60만원으로 화성군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사격장 설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폭과 전폭기 소음 및 폭격시 굉음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유리창이 깨어지는 등의 재산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군측은 파손된 부분을 확인하여 깨어진 유리를 교환하고, 손괴된 주택의 수리를 위한 시멘트를 공급해주는 정도의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4) 이 밖의 크고 작은 마을 피해

매향리 사격장 인근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극심한 소음은 가축의 성장발육과 번식에 영향을 미쳐 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낙농업과 양계업 등을 경영하던 농부들은 모두 생산력의 격감과 번식의 곤란을 경험하고 있다. 매향리에 새가 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무자비한 폭격 소음에 새가 안정적으로 부화하지 못하며, 새들이 도저히 생식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향리에 사는 젖소들은 외지의 젖소보다 착유량이 적다. 다른 마을에서 임신한 소가 매향리에 오면 새끼를 낳지 못하고 거의 유산한다. 매향리에서 자란 소는 소음에 적응이 되어 무사히 새끼를 낳지만 송아지가 작다고 한다. 닭들 역시 폭음에 놀라 양계장 한쪽으로 몰려 압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 매향리 주민들의 투쟁

1) 투쟁 과정

주민들은 1988년 민주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7월 4일 마을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사격장 주변 8개 마을 '합동소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

성하고 경기도와 국방부, 청와대, 사회단체, 종교계 등에 청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에 미군은 7월 25일~26일 양일간 매향리 일대 주거지역에 대한 자체 소음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소음도가 국제 민간항공기구 규제 권고치 90 내지 110WECPNL로 나타나 주거불능 지역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군측은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매향리 사격장이 미군에게 극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미군측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오만한 자세로 일관하였다.

매향리 사격장 주둔 미군 지휘관인 C. W. 앤더슨 소령은 1988년 7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격장 부근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곳이 한국 내에 하나밖에 없는 사격장으로 미공군 전력의 사활이 걸려 있다”, “매향리 사격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공군사격장으로는 최적지”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보상과 기지이전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 내 문제”이며, “미공군은 손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군 자체 경비병력과 경비원들에게는 사격연습이 행해지는 동안 청각기관 보호를 위하여 헤드폰과 유사한 형태의 청각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레이저포 사격의 경우에는 섬광으로부터의 시각보호를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주민들은 1988년 11월 3일, 대책위 회의를 개최하여 11월 25일까지 정부측으로부터 대책의 제시가 없을 경우 사격장 점거농성 등의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국방부와 경기도 및 미군측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상기 기한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안의 제시가 없자 12월 12일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책위 주민 7백여 명이 매향리 사격장 안에 진입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미군기지를 점거농성하면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후 자진 해산하였다. 이후에도 정부당국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1989년 3월 6일 2차 사격장 점거농성을 벌였다. 여기에 당국은 경찰 9개 중대를 투입하여 무자비하게 시위를 강제 해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주민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찰은 대책위원 9명을 불법연행 하였으나 주민들의 조직적 항의에 모두 석방하였다. 그 후 주민들은 3월 18일 또다시 사격장에 들어가 사격표적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이고, 3월 21일경에는 민정당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만나 국방부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난 뒤 시위를 자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3월 20일부터 사격장 시설보호의 명목으로 주민들의 사격장 출입을 일체 금지하여 봄철 영농작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4월 28일에는 국방부를 방문하여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들로부터 사격장 민원대책에 대한 정부당국측의 설명을 들었으나 시원스런 답변은 얻지 못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시위 자제를 조건으로 경작을 위한 사격장 출입만을 승낙받고 돌아오고 말았다. 이후 주민들이 시위를 자제하고 봄철 농사일에 몰두하던 중, 1989년 5월, 미군측이 사격장 내 전만규씨(대책위 위원장) 소유의 논과 모판에 트랙 4대분의 돌과 흙을 부어 매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걸 누가 보아도 계속되는 주민 시위를 주도한 데 대한 ‘고의적인 보복행위’임에 틀림없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미군기지로 달려나가 책임자 사과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은 야구방망이와 군용보트용 노로 주민들을 무차별 구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당일 21:00경부터 매향리 사격장내에 진입하여 M16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미군 기동타격대의 위협을 받고 밖으로 쫓겨나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격장 내 시설 및 집기 일부와 한국인 통역관들 소유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대책위원장 전만규씨와 부위원장 백동현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되었고, 그 밖에 30여 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들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당시 화성경찰서 형사들은 대책위원들의 집에 새벽에 난입하여 구둑발로 안방에까지 들어가 속옷바람으로 취침중인 주민들을 불법 연행하였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은 분명 미국측에 있으니만큼 미군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진 못할망정 무조건 덮어두고 피해 주민들만

범법자로 몰아 형사처벌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전만규씨와 백동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컸다. 1년 가량 계속된 사격장 점거 농성과 시위가 사격장 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주민대표들이 무더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처만을 남긴 채 막을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오랫동안 심한 분노와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그러던 중 1994년 12월 14일, 사격장에서 화약 폐기물 처리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인근 주택 130여 채 지붕이 내려앉고 벽에 금이 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군 당국은 처음에 세입자를 포함한 피해를 입은 180여 세대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나 세대당 3만원꼴도 되지 않는 5백만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한미행정협정의 피해보상 절차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었다. 그 후 주민들은 사격장이 설치된 지난 195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발탄 폭발 등의 사고로 주민사상자만도 6명에 이르고, 소음성 난청과 가옥과 숲, 폭음에 따른 젖소 유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1995년 6월 말 수원지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해 8월, 수원지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쿠니 사격장 주변을 둘러싼 주민피해 보상액을 모두 3억5천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28억원에 턱무늬이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이후 1996년 7월에는 국내 처음으로 매향리 등 9개 리 일대 주민 3천5백명이 국가를 상대로 '쿠니 사격장'이 들어선 1968년부터 28년 동안 주·야간 되풀이되는 전투기의 사격·폭격 훈련에 의한 소음피해 등으로 인한 보상을 위해 1인당 1천만원씩 3백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실제 추진되지는 못하고 대신 1998년 2월, 소음공해 등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998년 4월 22일 1차 공판에 이어 5월 22일 1차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등 진척의 기미를 서서히 보이고 있으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미군들은 현장조사가 있던 날 미리 그

사실을 알고 평소보다 훈련횟수를 줄이고, 비행고도를 높이는 등의 기민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실태조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1999년 2월에는 폭탄투하 위험지구 내 거주하는 신현덕 외 191명의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재청원하였다.

2)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한·미 정부당국의 입장

주민들의 요구는 사격장을 이전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직접 피해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도 충분한 보상을 통해 집단 이주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격장 이전의 경우, 미군측이 A급 사격장 손실을 우려하여 크게 반발하는 바람에 거의 가능성이 없고, 집단 이주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1996년 5월 3일자 민원회신에서 “당해 시설은 비행사격 훈련에 따른 소음공해와 안전사고가 수반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전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격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그렇다면 이곳 매향리 주민들은 귀머거리 짐승으로 아느냐”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집단 이주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에서 이주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군당국은 집단 이주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있긴 하나 한 미군 관리의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있어야 실제 전투와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여 경악케 하고 있다. 주민들을 ‘살아있는 타겟’ 삼아 폭격훈련을 그야말로 ‘실감나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

주 민	한 국 정 부	미 군 당 국
사격장 이전	당해 시설은 비행장 사격훈련에 따른 안전 사고가 수반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전 사업 추진 어려움	A급 사격장 손실 우려, 반대
폭탄투하 위험지구내 거주하는 매향1,5리 주민 200여세대 집단이주 및 보장	현재 검토중이나 이주 지 선정, 과도한 이주비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칙적 합의
기초사격권내 거주하는 500여세대 종합안전대책 마련	기총 사격시설 이전 검토	
전투기 비행소음만 발생 되는 지역 거주주민 100여세대 방음시설보조 및 피해보상	피해보상기준 및 법적 근거 미비 예산 소요 과다로 실행에 어려움	

3) 최근 국방부 발표 대책

(1)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민원관련 국방부 종합대책 (2000년 5월 16일)

- 국방부는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피해보상과 사격장 주변 안전보장 등의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매향리 사격장은 1955년 한·미간 협의하에 설치된 국내 유일의 미공군사격장으로 지난 45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한미연합전력 향상을 위한 주한미군의 훈련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사용 및 유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현재 해상사격장 위험지역내에는 민가 및 기타시설이 없으며, 충분한 안전거리밖에 있는 매향 1, 5리에는 주민 23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향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97.1월 타지역으로 이주를 합의하여 이를 추진해 왔으나, '98.1월 주민합의가 파기됨에 따라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이주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총사격장 위험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 석천리, 이화리 등의 주민들은 현재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고려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항공기 진입 방향이나 고도, 표적지역 조정 등으로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과 협의하여 이주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방부는 5월 8일 발생한 주한미군 A-10기의 농섬일대 폭탄투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한미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피해를 확인할 예정이며 합동조사 완료시까지 사격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군수국장 이광길 소장과 주한미군 부참모장 던(DUNN) 소장 등 양측의 관계인사 14명으로 편성되며 5월 20일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 5. 8 주한미공군 A-10기 농섬 폭탄투하와 관련 주민피해 한-미 합동 조사결과 (2000년 6월 1일)

- 한·미 합동조사단은 지난 5월 8일 주한 미공군 A-10기의 농섬 폭탄투하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상황을 대상으로 5월 18일 부터 27일까지 한미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우선 주한 미공군기 농섬 폭탄투하로 인해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 한미 합동조사단은

- 한측에서는 국방부 군수국장 외 12명, 미측에서는 주한 미군사령부 부참모장의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국방부와 주민단체가 추천한 2개의 민간전문회사를 합동조사에 참여시

켰습니다.

- 합동조사는 먼저 수원지검과 우정면 사무소에 주민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피해신고 3,459건에 대하여 조사단 요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 폭파지점인 농섬 일대로부터 인근 주민거주지역까지 전지역에 걸쳐 인명피해, 시설피해, 가축피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먼저 지난 5월 8일 미 A-10기가 농섬에 실무장 폭탄을 투하 하게 된 경위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당시 미 7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A-10기는 5월 8일 08시 05분에 오산 비행장을 이륙하여 실무장 폭탄투하 훈련을 위해 군산 직도 사격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A-10기의 조종사는 08시 20분 경에 엔진 1개가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비상조치로서 비행하중을 줄이기 위하여 최근 사격장인 농섬 북서쪽으로 긴급히 이동함과 동시에 A-10기에 탑재하고 있던 MK-82 다목적탄 6발을 해상에 투하하였습니다. 폭탄 투하는 폭발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 투하하지 않고 0.4초/42.6m 간격으로 시차를 두고 투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폭탄 투하지점은 육지로부터 1850m 떨어진 곳이며 최기 마을로부터는 2020m 이격된 해상이었습니다.
- 이러한 관련 조종사의 조치는 우발상황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종사의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농섬에 투하된 MK-82 폭탄은

- 일반목적탄으로서 무게는 241kg(500 파운드)이며 길이 2.21m, 직경 27.5cm로서 폭탄 내부에는 89kg의 폭약을 내재하고 있는 탄약입니다.
- 이 폭탄은 폭발시 내장되어 있는 89kg의 폭약에 의해서 파편, 진동, 폭발음을 발생시켜 위험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인명과 시설, 그리고 가축 등에 물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폭발시 파편의 최대 비상 거리는 777m 이며 진동은 지반구조와 거리에 따라 상이하지만 6발이 동시 폭발했을 때 1.8km 이격된 지점에서 0.42cm/sec의 미진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 금번 피해조사는 바로 이러한 MK-82 폭탄이 폭발시 발생하는 파편, 진동, 폭발음과 같은 물리적 현상이 인명과 시설, 가축 등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첫째 인명피해 조사결과입니다.

- 우선 금번 미 A-10기 농섬 폭탄투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금번 농섬 폭탄투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접수 건수는 총 13건이었으며, 주요 피해증상으로는 신체부위가 떨리는 진전현상(tremor)과 수족경련, 정신적으로는 초조, 불면, 피로 등이 주민들로부터 신고되었습니다.
- 조사결과, 신고된 신체적·정신적 증상들이 폭발물의 폭발에 의한 것인지 판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향후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적법절차에 의거 처리하겠습니다.

□ 둘째 시설피해 조사결과입니다

- 피해신고는 총 558 세대에 3404건이었으며
- 주요 신고내용은 유리창 파손 137건, 건물벽체 및 담장균열 2907건, 기타 스테트·기와 파손등이 360건이었습니다.
- 시설피해조사는 국방부와 주민이 선정한 2개 민간 전문회사(안전진단 전문회사 그룹원, 경기안전진단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폭탄폭발시 시설물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파편에 의한 충격과 진동에 의한 것입니다. 두 가지 영향중 파편에 의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MK-82 일반목적탄의 파편 비상 거리가 최대 777m이고 폭탄지점으로부터 인근 시설물의 거리가 2km -4.7km인 점을 감안할 때

파편에 의한 피해는 있을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파편에 의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시설피해 조사는 진동에 의한 시설피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진동조사를 위한 기준 및 참고자료는 독일의 「충격진동에 의한 건물피해 기준」과 시설안전진단공사의 「시설물 점검 및 조사요령」, 그리고 노동부 고시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번 진동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단은 두 가지를 가정하였습니다.
 - 하나의 가정은 폭탄투하지점인 농섬으로부터 주민들이 시설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마을지역까지의 지반/지질 구조를 폭발시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연암층으로 가정했고,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은 A-10기가 폭탄을 5월 8일 농섬 부근에 투하할 때폭탄을 날발로 순차적인 방법에 의해 투하했었지만 6발을 동시에 투하한 것으로 하여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조사 대상 시설물도 지역별로 가장 심하게 피해를 받았다고 주민들이 신고한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MK-82폭탄 6발이 동시폭발 되었을 때 폭발지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해변가(폭탄투하지점으로부터 해안가까지의 거리는 1850m)에 미치는 충격은 0.42cm/sec 규모로서 이 충격은 동거리(1850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및 아파트 등의 시설물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기준충격인 0.5cm/sec 보다 적은 규모로 밝혀졌습니다.
 - 표본조사된 피해건물들은 MK-82 일반목적 폭발지점으로부터 2020m - 4,750m 이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된 피해내용들은 폭탄투하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향후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적법절차에 의거 처리하겠습니다.
- 셋째 가축피해 조사결과입니다.

- 주민 피해신고는 폭발지점으로부터 3,500m - 4,270m 이격된 4개 마을에서 총 15세대 42두의 젖소가 유산이 되었다는 내용이 접수되었으며, 수의사의 진단일자는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로 확인되었습니다.
- 조사결과 이 15일 어간에 발생되었다고 신고된 젖소 유산이 폭탄 투하와 관련된 것인지 판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향후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적법절차에 의거 처리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 우리 군과 주한 미군은 한미연합에 의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매항리 사격장도 사격훈련장으로서 지난 50여 년간 유지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한미 연합 대비태세 유지에 중요한 몫을 해왔습니다.
- 우리 군은, 이 사격장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임을 더욱 명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군은 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협의하에 주민 이주대책을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사격장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격방향 조정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또한 우리 군은 국민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속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더욱 전투력 육성에 매진하고 철통같은 한미연합태세 유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 끝 -

(3) 매항리 사격장 한·미 합동조사관련 후속조치 계획 (2000년 6월 5일)

- 먼저 매항리 사격장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령부는 지난 5월8일 주한 美공군 A-10機의 농섬 MK-82 폭탄 투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상황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미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설피해는 폭탄폭발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인명·가축피해는 폭탄 폭발에 의한 것인지를 판명하지 못하였으나, 판단결과와 상관없이 인명·가축피해는 물론 시설피해에 대해서도 향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6월 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한·미 합동조사는 지난 5. 8일 미 공군 A-10機의 농섬 폭탄 투하 사건에 국한된 조사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난 50여년간의 누적된 피해에 대해서는 규명과 복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한편 매항리 사격장은 지난 55년 주한미군에 供與된 한국내 유일한 미 공군 사격장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 전비태세 유지와 한반도 전쟁억제차원에서 사격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동 사격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추가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 사격장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매항 1, 5리 주민 238세대대의 이주를 조기 시행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이주는 지난 '97년 주민합의하에 추진되었다가 '98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시 분리되어 현재는 이주사업 추진이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기만을 기다려 왔으나 이주를 반대하는 소수 주민(32세대, 전체가구의 13%)들의 동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사격장 여건이 더욱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이주를 희망하는 대다수 주민의 입장을 존중하여 희망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가구별 이주를 적극지원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 이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방부의 지원방안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6월 7일 매항1리 사무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토지보상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건물, 나무, 어업, 축산 등에 대한 정밀재산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 둘째, 매항리 사격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보상을 청구하시면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가되, 이러한 피해보상은 절차상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우선적인 조치의 하나로 軍 공병부대를 투입, 대민지원 형태로 피해복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농섬 폭탄투하로 피해 신고된 3400여건의 시설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피해복구를 신청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최선을 다해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야전공병단 1개 중대를 현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인명피해 신고를 한 13명의 주민에 대해서도 군 의료진으로 하여금 진료를 지원토록 하고 신고된 가축피해 역시 수의장교를 현지에 파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민이주 및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민원실을 현지에 설치하여 주민이주를 위한 행정편의를 돕는 것은 물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총사격장 내 표적위치 조정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한·미 합동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총사격장의 표적위치를 농섬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한·미간에 폭넓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총사격장 표적을 해상으로 옮기는 문제는 '98년에도 1차 검토한 바 있으나 표적설치의 기술적 어려움과 피탄에 따르는 해상안전문제, 과도한 예산 및 장기간 공사소요, 그리고 훈련효과 등의 현저한 감소 등 많은 제한사항을 수반하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주장하는 사격장의 전면 폐쇄는 매향리 사격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고 타 지역으로의 이전 또한 대체 공간, 예산문제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향리 사격장은 지난 '55년 주한미군에 공여된 이후 사격장 설치 초기에는 주변 지역에 민가가 적었으나 점차 인근 지역에 이주 주민이 늘어나면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 거의 모든 군사기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군은 「국가안보와 주민 생활권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조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전투력 유지와 철통같은 한·미 연합대비태세 유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끝 -

④ 매향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방부 종합대책 (2000년 8월 18일)

□ 먼저 매향리 사격장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국방부는 지난 5월 8일 주한 미공군 항공기의 폭탄비상투하 이후 한·미 합동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6월 5일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이후 국방부는 주한 미군,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후속조치계획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우선, 주민 불편해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원실」을 현지에 설치하고 대민지원을 원하시는 주민들에게 가옥 보수,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는 물론 마을 하천 정리, 마을회관 및 버스 승강장 보수 등을 성심 성의껏 지원해 왔습니다.

- 아울러 공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원대책단」을 구성하여 -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원해결을 위해 폭넓게 협의를 실시해 왔고 - 사격장을 사용하고 있는 주한 미 7공군과도 소음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협의해 왔으며, 오늘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매향리 주민들께서 제기하셨던 불편의 주요 요인은

- 기총사격장에서의 기총사격 및 지상화기 사격 등에 따른 「소음」과
- 농섬훈련장에서의 항공기 실탄사격, 불발탄 처리, 그리고 비상시 실무장 폭탄 투하에 의한 「주민안전에 대한 불안」 등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저각도 기총사격에 의한 소음불편을 가장 심각하게 제기하셨습니다.

□ 국방부는,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한·미간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 매향리 일대 주민불편의 주요인이었던 기총사격장에서의 주한 미공군 기총사격과 한국군 지상경계부대의 공용화기 사격을 중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에 위치한 기총사격장 일대에서는 모든 사격훈련이 금일부터 중지됩니다.
- 둘째, 농섬훈련장에서 실시하던 항공기의 실탄사격을 중지하고, 소음이 적고 폭발 위험이 적은 연습탄만을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 셋째, 따라서 농섬 지역에서 실시하던 불발탄 처리는 소음이 적은 연습탄에 한하여 처리하고 사전에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넷째, 항공기 이상 발생 등 비상시 실무장 폭탄투하에 따른 소음, 안전 등의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비상시 투하지역을 현재의 위치에서 서쪽

해상 방면으로 700m 옮기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다섯째, 불의의 오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의 사격장 진입 및 이탈경로를 해상으로 조정하고, 비행고도·훈련형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조정하여 더욱 안전한 훈련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렇게 되면

- 기총사격장에서의 저각도 기총사격과 지상 공용화기 사격의 중단으로 매향리와 석천리, 이화리 주민들의 소음불편은 거의 없게 될 것이며, 농섬에서의 항공기 실탄사격 중지, 연습탄에 국한된 불발탄 처리, 비상 폭탄 투하지점 조정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도 또한 크게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매향 1.5리 주민 移住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에 이주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 또한 주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손해부분에 대한 배상 문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국가배상 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그 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을 최대한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동안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화성군 및 매향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하는 뜻에서 필요시 대민지원활동을 포함, 민군유대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 軍은 지속적인 전투력 유지와 철통같은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통해 군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끝 -

5. 투쟁 일지

- 1988. 6. 14 : 매향1리 청년회에서 주민들에게 드리는 글 제1호를 유인물로 배부. (1999년 6월 14일 현재까지 14호 배부)
- 1988. 7. 4 : 피해가구 6백13세대가 연명하여 국방부, 경기도, 청와대 등에 진정서 제출
- 1988. 7. 25~26 : 미군당국의 매향리 일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측정, 주거불능 지역 판정
- 1988. 8. 17 : 사격장 인근 8개 마을이 모여 '합동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 구성
- 1988.12. 12 : 주민들 최초로 사격장 점거농성(1차) 후 자진해산
- 1989. 3. 6 : 피해주민 1천5백여 명이 사격장 통제소 점거 및 사격목표 방화 등 시위농성(2차),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주민 3명 부상
- 1989. 3. 18 : 사격장 점거농성(3차)
- 1989. 4. 28 : 주민대표(전만규 외 6명)들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설명 들음
- 1989. 5. 29 : 사격장 내 전만규씨(대책위원장) 소유의 논에 미군측이 고의로 자갈을 부어 매몰한 사건을 계기로 미군측과 충돌, 주민대표 2명 구속 등 마을주민 무더기 사법처리.
- 1994.12. 14 : 사격장에서 화약 폐기물 처리작업 도중 대형 폭발사고
- 1995. 6. : 수원지검에 폭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1995. 8. : 수원지검에서 피해보상액 3억5천만원으로 잠정 결정
- 1996.10. 2 : 9년만에 청원서를 또다시 국회 제출(7백13세대주 및 소개의원 33인의 서명날인) 9년이 지난 지금도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폭음 등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사격장을 이전시켜 주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주민집단이주대책을 세워 달라는 취지
- 1997. 9. 9 : 국회 청원에 대한 주민이주 대책에 관한 국방부의 대 주민설명회
- 1998. 2. 27 : 소음공해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제기(부록 참조). 서울지법에서 1차공판 심리 후 담당판사

- 및 변호사, 감정전문인 등 현지 답사, 현재 재판 계류중
1999. 2. 5 : 폭탄투하 위험지구 내에 거주하는 신현덕 외 1백91명의 주민 이주대책재청원
2000. 5. 16 : 자통협, SOFA개정국민행동, 천장연 등 단체들이 미 대사관 앞 반미 연대투쟁 집회 개최 후 명동성당에서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SOFA개정, 매향리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농성투쟁 시작.
2000. 5. 25 :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비롯한 주한미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인사 200인 시국선언문 발표.
2000. 5. 31 :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단, 전만규 위원장 등과 함께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미 부대사 면담, 미 부대사, 매향리 폭격장 폐쇄 요구에 대해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훈련이 필요하고 사격장도 필요하다"라고 함.
2000. 6. 1 : 한·미 합동조사단은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주변의 민간 피해 사건을 조사해온 결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유리창과 건물파손은 5월 8일의 폭탄 비상투하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고 2일부터 폭격을 재개하겠다고 발표.
2000. 6. 2 : 미 공군 폭격 재개. 매향리 주민, 사회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폭격재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기자회견 도중 폭격이 재개되자 전만규 주민피해 대책위원장이 사격장 안으로 들어가 깃발을 찢음. 경찰, 전 위원장 연행. 국방부와 주한미군, 7일까지 훈련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
2000. 6. 5 : 국방부, 매향리 사격장 후속조치로 매향리 주민의 이주 조기 실시, 군병부대를 투입하여 피해 복구, 기총사격장 내 표적 위치 조정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등의 세가지 계획을 발표. 매향리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인데 우리가 왜 나가느냐. 미군이 매향리를 떠나야만 한다"며 사격장 즉가 폐쇄 요구.

2000. 6. 6 : 매향리 폭격장 폐쇄 제1차 국민대회 개최. 매향리 주민, 사회단체, 학생 등이 경찰의 통제를 뚫고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매향리 사격장 앞에서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인간띠 잇기대회 개최. 집회 참가자들은 사격장 정문에서 1.5km를 에워싸고 철조망을 뜯어냄.
2000. 6. 8 : 인의협, 매향리 지역 주민들의 혈중 납농도가 3.42 $\mu\text{g}/\text{dl}$ 로, 일상적으로 납을 다루는 노동자들(2.03 $\mu\text{g}/\text{dl}$)보다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
2000. 6. 17 : 매향리 사격장 폐쇄 제2차 국민대회 개최.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기 위해 매향리, 매향리 인근의 조암, 남양만 방조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 등에서 시위가 전개됨. 2,000여명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들어가 집회 성사시킴.
2000. 6. 19 : 미군 사격 재개(전면적으로 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사격 개시) 매향리에서 사격 재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항의 시위. 이날 밤늦게까지 주민들과 사회단체 회원들, 학생들이 매향리 사격장 정문, 해상사격장 후문 등에서 사격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 서울에서도 자통협, 범남본, 전국연합, 민주노총, SOFA개정 국민행동 등 각계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미군의 사격재개 규탄과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시키기 위해 결사적인 투쟁과 범국민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는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미대사관으로 항의 방문 전개.
2000. 6. 20 : 미군의 폭격을 저지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농성점거 투쟁 전개 (1차 점거 오전 10시 30분, 2차 점거 오후 4시 30분) 1차 학생 5명, 2차 최중수 신부와 학생 1명 전원 연행됨.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 헬기가 농성에 있던 이들에게 공포탄과 7차례의 실탄 시총사격 감행.
2000. 6. 21 : 미군이 또다시 사격을 개시하자 3차 학생 결사대 6명 사격

장 진입. 태극기를 휘날리며 6명의 학생이 30여분 동안 시위하다 전원 연행됨. 매향리 주민, 사회단체, 학생들 폭격장 정문앞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

2000. 6. 22 : 매향리 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1차 간담회 개최.
2000. 6. 24 : 매향리 폭격장 폐쇄 제3차 국민대회 개최.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8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개최됨. 사격장 철조망 절단과 사격장 안으로 진입하는 투쟁 전개.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민주노총, 자통협, SOFA개정 국민행동 등 200여명이 '매향리 폭격 중단, 폭격장 폐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한반대' 집회. 미8군 사령부까지 행진.
2000. 6. 28 : 매향리 주민 4백여 명, 화성군청 앞으로 가서 장례 시위 및 주민등록증 반납 투쟁 전개. 대표들 화성군수 면담.
2000. 6. 30 :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을 위한 2차 간담회에서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상임 대표 : 권영길, 단병호, 문정현, 오종렬, 이종린, 청화, 최용운, 홍근수)
2000. 7. 8 :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선포 기자회견.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위한 제4차 범국민대회 개최.
2000. 7. 15 : 산공안단압 분쇄,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 SOFA 전면개정, 양민학살 진상규명 범국민결의대회. 3000여명이 용산역 광장, 미8군사령부 앞에서 집회.
2000. 7. 16 : 매향리-오키나와 한일연대집회가 매향리에서 열림. 폭격장 행진 중 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지도부(최용운-상임대표, 김종일, 김용한-공동집행위원장) 등 6명이 연행되어 7월 19일 최용운, 김종일, 김용한 등 3명 구속됨.
2000. 7. 18 : 매향리-비에케스 국제연대집회. 장소 : 국방부, 미8군사령부 앞.

2000. 7. 19 : 매향리 폭격장 폐쇄 촉구 비에케스 연대 집회. 장소 : 매향리 폭격장.
2000. 7. 22 : 매향리 폭격장 폐쇄와 범대위 지도부 석방 촉구 결의대회. 장소 : 국방부 - 미8군사령부 행진.
2000. 7. 23 : 매향리 폭격장 폐쇄와 SOFA전면개정을 위한 민주노동당 투쟁선포식. 장소 : 미8군사령부.

제2절 미군의 독극물 한강 무단 방출 사건

1. 사건 개요

미군은 오랜 기간동안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하수를 통하여 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 8군에 근무해왔던 미국 국적의 군무원과 병사들을 통하여 확인된 사건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계속되어 오던 중 지난 2월 9일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 총 480병)를 한꺼번에 한강으로 연결된 하수구를 통하여 방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당일 미 8군으로 하청공사를 하던 인부들에 의해서 목격되었으며, 사진으로도 확인되었다.

위 사건은 지난 2월 9일 미군8군 영안실(U.S Army mortuary) Build. 5498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성분이 든 시체방부처리용 용액 20박스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무단 방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미육군 사망시 본국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 병24개, 총 480병)가 영안소 부책임자인 미육군 민간부 군무원 - 11 등급의 Mr. Mcfarland, Albert L의 명령에 의해 싱크대로 버려진 사건으로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며, 이 물질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Mr. Mcfarland, Albert L은 욕설과 함께 실행을 종용했다.

영안소 부책임자인 Mr. Mcfarland, Albert L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로 보낼 예정이었던 이 약품상자에 단지 먼지가 쌓여 있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은 독극물을 싱크대를 통해 버릴 것을 명령한 것이다.

이 사건이 당시 집행자의 진술을 통해 5월15일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 사령부는 7월10일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통보되었다. 실제 집행자는 약품처리후 두통과 메스꺼움 등으로 3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포름알데히드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로서 당시 포름알데히드를 버리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군무원이 병가를 내면서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미 제 34사령부는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희석하면 인체에 무해하며, 한강에 버리는 것은 결국 물에 희석됨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격분한 용역 노동자는 위 사실을 녹색연합에 알려왔으며 위 사건에 대한 확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미군이 버린 포름알데히드의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당시에 포착된 방류하는 사진과 관련된 공문을 입수하게 되었다.

2. 포름알데히드는 무엇인가?

포름알데히드는 무색 기체로 물에 잘 녹고 살균방부제로 이용되며, 그 수용액이 포르말린이다. 1981년에 만들어진 Schenke 보고서에 따르면 오랫동안 포름알데히드에 기체 상태에서 폭로되었을 경우 정서적 불안정,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 곤란 유발하며, 액체 상태에서 폭로되었을 경우 어패류를 죽게 만들며(어류에 대한 치사농도 : 50-100ppm) 사람에게 대해서는 30ppm정도에 폭로되면 질병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100ppm이상에서 1분이상 노출될 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의사에게는 포르말린(formalin)의 형태로 해부, 병리조직의 보존제, 방부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140만명의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생물학과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폭로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부학자, 병리학자, 표본제작자에게서 뇌암(11/13차례), 백혈병(6/9차례), 대장암(7/9차례) 등의 발견되었다(Human Study).

우리나라 환경부는 <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로 포름알데히드를 유독성 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흡입 또는 피부에 접촉하거나 삼키면 유독하며,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한 것으로 특성을 규정하고 고독성(高毒性)과 환경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처리·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는 액체와 기체의 형태를 동시에 갖고 있어, 하수구에 버리면 그 가스가 하수관을 타고 퍼진다. 물론 하수구가 연결된 모든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체에 폭로되면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물로 희석되지만 유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미군은 사망한 미군 병사를 자국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병사의 몸속에 포름알데히드를 주입하며 일반적으로 미어라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미군은 위 포름알데히드를 오키나와에 있는 PUMP SYSTEM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원칙도 무시한 행위인 것이다.

3. 사건의 경과, 대응 내용 및 결과(일자별)

(7월 13일)

- 주한미군이 금년 2월 용산기지에서 부패방지용 포르말린 228리터를 한강에 무단방류했다는 주장이 '녹색연합'에 의해 제기
- 외교부 및 환경부, 미측에 우려를 제기하고 조속한 사실확인 및 조

기대응 촉구

(7월 14일)

- 주한미군 1차 조사결과 발표
 - 포르말린 75리터 방류사실 인정, 유감 표명 및 사실관계 추가 조사
 - 향후 한·미 양국 환경규정 계속 준수 노력
- 외교부 및 환경부, 미측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추가 조치 요구
 - 관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 필요

(7월 20일)

- 녹색연합은 관계자(A. Mcfarland 미군 121병원 영안소 부소장, T. Schwartz 주한미군사령관)를 서울지검에 고발

(7월 24일)

- Petrosky 미8군 사령관 명의, 우리 국민앞 사과성명 발표.
 -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결과 공개, 적절한 시정조치 및 향후, 여사사건 재발방지 조치 약속

4. 이 사건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미군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지난 매항리 폭격사건에서도 미군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미군시설에서는 환경을 포함한 어떠한 피해도 없다고 밝혀왔다. 특히 미군은 미국의 환경기준(EPA)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의 어떤 부대나 어떤 기업보다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혀왔다. 그러한 미군이 1,000만 수도권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한강에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무작위로 방류하는 만행은 한국국

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그들은 결국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 3 절 미군의 수익 사업

1. 주한미군 1년 매출 3억원 - 주한미군 돈 벌러 왔나?

1995년 3월 17일 미 18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해 전국 110여 개 미군부대내에 미군위락시설로 설치한 클럽, 양식당, 슬롬머신 6천여대 7개 골프장 등을 운영, 모두 2천9백여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30대 재벌그룹에 들 수 있는 규모로 1993년도 기준 당시 29위인 진로그룹 매출액의 두배에 달하는 큰 장사를 한 셈이다.

주한미군은 슬롬머신에서 벌어들인 돈 중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에서 최소한 1천여억원을 미국방부 등에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설물 이용객 중 한국인의 비율이 80% 정도인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오산 K55 공군기지 골프장과 성남 골프장, 용인 미8군사령부 내 위락시설등은 이용객의 80~90%가 한국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미행정협정에 미군위락시설은 '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들의 가족들' 만을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개인과 기관' 도 이용할 수 있다는 행정협정 합의의사록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증을 남발해 한국 정부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2. 미8군 불법 영어 과외 - 중학생에서 중년 여성까지 국적불명 영어과외 극성

주권이 포기된 곳, 샌프란시스코로 통칭되는 미8군 내 미군속이나 미군 부대 초청계약자의 불법 영어강습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강의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미군부대 관련업무 외에 보수를 받고 일을 할 수 없어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습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매주 토, 일요일이면 미8군의 각 게이트와 한남동 일대에는 4~5명씩 떼를 지은 중고생들로 붐비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을 태우고 온 부모들의 차량도 종종 눈에 띈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 주둔 부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미군속 등에게 부대나 부대 바깥 숙소에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생은 대구에만 3백~4백명에 이를 정도로 불법 영어교습이 심각한 상태이다. 불법 영어교습비는 4~5명씩 그룹을 지어 일주일에 2시간씩 한 달에 4번하고 사병, 하사관, 장교에 따라 시간당 1만원에서 2만5천원까지 가격차가 다양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이곳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 미군 중에는 미국에서 정규대학을 나온 장교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병이거나 사병 부인이어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지 여부와 대부분 교사가 군인이라 GI 영어(군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언어) 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영어 회화를 배우기보다 아메리칸 드림에 취해 '미국문화에 젖어 보려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상당수라는 그들의 저급 문화와 저속언어가 여과 없이 수용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군 부부 모두가 과외를 할 경우 한달 수입이 500만원 정도여서 미군들 사이에는 한국 연장근무를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것은 한국을 '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 미군 주정차 위반 범칙금 부과 못해 외국인 차량 단속의 어려움

서울시는 지금까지 1천7백대의 주외교관 소유 차량 및 3천대의 미군 소속 차량의 불법 주정 차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장만 발부해 시민들로부터 형평성을 잃은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위반 차량이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즉시 견인한 후 별도의 부과토록 하는 한편, 단속된 차량이 범칙금 과태료 등을 체납할 경우 외무부에 명단을 통보,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단속방식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과 군속, 가족 등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으며 미 제19지원사와 미 제20지원단 이 위치한 대구 지역에서는 '말이 안 통한다.' 는 이유로 외국인 위반차량을 적발하고도 그냥 보내는 등 시일이 지나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경찰관들은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대 외국인 홍보를 한 후 우리나라 말로 위반사실을 알리고 알아듣지 못할 경우 영어로 위반사실을 적은 카드 등을 제시, 단속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을 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은 내국인과 교통 단속에서 차별을 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관행이라는 지적 속에 민족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영어가 아닌 우리나라 말로 단속활동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형성되었다. 따라서 대구 남부경찰서등 시내 경찰서는 외국인 차량단속책으로 최근 교통단속에 필요한 8개 문구와 주요 위반 사항 8개,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 경찰관들에게 숙지하도록 지시했다.

4. 황금알을 낳고 있는 미군부대 골프장 - 한국인 출입

대구 제3차 순환도로 개설의 걸림돌인 대구시 남구 대명5동 캠프워커내

A3 비행장 이전요구가 드센 가운데 지역 일부 인사가 지속적으로 미군부대 내 골프장을 출입해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

'한미친선골프대회' 때에는 시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외면한 채 1백여명의 지역인사들이 참가하여 시민들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제19지원사와 미 제20지원단이 골프 회원권 확보에 혈안이 된 지역 지도층 인사들에게 등록대장에도 없는 감사장을 남발한 뒤 골프회원 심사에서 감사장을 무효화하여 지역지도층 인사들이 미군들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골프회원권 로비'를 위해 미 제19지원사령관과 미 제20지원사령관 등 미군 장교와 가족들 170명에게 관광버스 8대와 경비 일체를 제공, 경주관광을 시킨 사실도 드러나 분노를 더하고 있다.

제 7 장

SOFA 관련 각계의 입장

제1절 정부의 입장

제2절 정당의 입장

제3절 국회속기록을 통해 본 SOFA 논의 과정

제4절 시민단체의 입장

제5절 언론에 비친 SOFA

제1절 정부의 입장

1. 대통령

1) 2000. 3. 18. 박준영 대변인 발표(브리핑)

대통령께서는 SOFA (한·미 행정협정)문제, 노근리사건 조사, 미사일 사정거리 문제 등을 한·미가 잘 협의해 처리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 2000. 8. 18 김대중대통령 미 CNN 방송과 회견(보도자료)

주한미군 계속 주둔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깨끗이' 정리됐다. 내가 김위원장에게 "현재는 물론이고 통일 후에도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 세력균형이 흔들려 동북아가 불안해지면 제일 고통받는 것이 우리다. 유럽에서 공산국가가 없어진 뒤에도 NATO와 미군이 존속하듯이 남북이 통일돼서도 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이 "남측 신문에서 이 문제에 관한 김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난 뒤 어찌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해 내가 깜짝 놀랐다.

어느 사회에나 있듯이 우리 국민중 극히 일부는 미군철수를 주장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계속 주둔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 등에 대

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반미가 아니다.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국 간 우호협력, 주한 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 등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3) 2000. 9. 7 박준영 대변인 발표(브리핑)

대통령께서는 또 SOFA문제와 관련해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께서는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전통적인 우호관계에서 볼 때 첫번째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과거의 관계나 국가적 이익으로 보나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은 계속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가끔 미국 언론에 반미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과 좀 다르다. 단지 SOFA협정의 개정과 관련해 독일, 일본과 같은 수준의 협약을 가져야 한다는 개정요구 소리는 있다. 현재 양측에서 진지하게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이 되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다"고 말씀했다.

4) 2000. 9. 7 박준영 대변인 발표(브리핑)

한-미 관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미국은 과거나 현재 앞으로도 최고 우방이다. 과거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싸워주지 않았으면 한반도는 공산화됐을지도 모른다. 또 미국은 경제재건에도 도움을 줬다. 지금도 한국에는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고,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우리의 주요한 우방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서 외교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관계가 국익에 맞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한국 내에서 SOFA 협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고, 노근리 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지, 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SOFA를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개정하자라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극소수의 반미 주장에 악용되고 동조세력이 늘어나 어렵게 될 수 있다. 미국도 이 점을 이미 잘 알고 잘 풀리길 바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관련, 사전과 사후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5) 2000. 10. 26 기자회견 전문(대통령언론회견)

김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대한 다소 이례적인 톤의 강한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법률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협정(SOFA)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37,000 주한미군 중 일부의 행동에 대한 한국민들의 분노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미감정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SOFA협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 국무총리

1) 이한동총리 국회답변(본회의 제16대 제213회 제5차 2000. 7. 11)

이 SOFA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당초의 66년 7월달에 제일 처음에 맺은 SOFA협정, 그것을 91년 2월달에 한번 1차개정을 했는데 그러한 협정체결과 또 1차개정을 통해서도 너무도 우리 입장이 반영이 제대로 안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럴 때마다 저희는 나토와의 협정이나 이스라엘과의 협정 또는 주일미군과 일본정부간의 협정, 이런 것을 언제든 지 제시하면서 우리의 주권독립국가의 그런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과의 안보동맹상의 여러 가지 관계라는 것이 일본이나 필리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개선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걸맞게 계속 개정을 협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봅니다.

3. 외교통상부

1) 한·미 SOFA개정협상 경과와 정부의 대책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8. 2~3일간 개최된 SOFA개정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SOFA의 조기개정이 장기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양측은 기소시 신병인도 및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법적 권리 보호문제, 형사재판권 관련 여타문제, 환경,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및 반환, 동·식물 검역,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한국인의 출입제한, 민사소송 절차 및 SOFA 대상자의 범위 문제 등 SOFA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측은 차기 협상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음.

또한, 한·미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인명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대물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는 대신 민사소송절차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배상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동·식물 검역,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등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차기협상에서 심도 있게 논의키로 하였다.

지난 8.2-3간 개최된 SOFA개정협상에서 우리측은 모든 관심사항을 제기하였고 양측은 10월초이전 개최될 차기 협상에서 모든 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키로 한 바, 정부는 양측간 의견 접근을 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다.

2) SOFA 개정협사에 임하는 구체적 전략(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번 8월 2일~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금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는 SOFA와 비교하여 불리한 요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신

병인도시기를 앞당기고 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나갈 것임. SOFA는 협정본문, 합의의사록을 및 양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금번 개정협상은 관련 세 문서의 개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3) 미군피의자 신병인도시기 조정에 대하여(의원질의에 대한 답변)

금번 개정 협상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의 조정과 검찰의 상소권 인정 등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SOFA와 비교하여 불리한 요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나갈 것임. 다만, 미측은 신병인도시기 조정을 위해 우리측의 ① 재판관할권 행사범위 축소 ② 미군 피의자에 대한 권리보호장치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 입장간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기존입장에 기초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임.

4) 주한미군의 환경범죄 예방 및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문제(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 SOFA 규정으로도 SOFA 대상자가 환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우리측은 형사재판관할권 행사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 정부는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최근 점증하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금번 SOFA 개정협상에서 환경조항 신설 문제를 미측과 적극협의해 나갈 것임. 한편, 환경조항을 SOFA에 신설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정부는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조속하고 철저한 사후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미측과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환경분과위 협의 채널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고자 함.

5) SOFA 개정 관련 통관 및 관세 규정의 개정과 미군고용 한국인의 노동권 보장 문제(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행 SOFA 제9조는 SOFA 대상자에 대한 통관과 관세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면세물품·불법거래 분과위를

통해 실제 운영 면에서도 한·미 양측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 SOFA 대상자의 관련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해 나가고 있음.

현행 SOFA는 미군당국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우리 노동법령을 준수하도록(conform with)함으로써 국내 일반 근로자에게 부여된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노동쟁의전 냉각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SOFA 개정 협상시 미측에 적극 제기할 것임.

6) 외교부는 SOFA 개정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주장과 요구를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부처와의 조율 문제(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는 SOFA 개정협상에 대한 최근 점증하는 국민의 관심을 감안해 시민단체 대표 접견, 각계로부터의 민원 접수 등의 경로를 통해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한편, 외교부는 SOFA 개정 협상 관러부처의 법무부, 국방부, 노동부, 환경부, 재정부, 농림부 등과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부입장을 수립해 오고 있음.

제2절 정당의 입장

1. 한나라당

1) [성 명]SOFA개정 협상 시작에 부쳐(대변인 브리핑 2000. 8. 2)

SOFA개정 협상이 오늘 시작된다. 이미 기존 SOFA 안의 문제점들은 여러차례 지적되었다. 이번 개정협상을 통해 양국간 갈등국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시정돼야 한다. 특히 재판관할권에 대한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는 거둬 들어져야 한다. 환경·노동·검역분야까지 포함되는 협상이 되길 기대한다. 최소한 일본·독일 수준의 내용정도로는 개정돼야 한다. 한·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미국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금번 협상이 지금 일고있는 반미 움직임을 완전히 잠재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논 평]양국 선린우호를 염두에 둔 SOFA 개정 돼야(대변인 브리핑 2000. 7. 18)

미국측은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SOFA 개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재판형량 3년 이내 사안에 대한 재판권 포기요구는 명백히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다. 사실상 개정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더우기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환경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불평등조항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국

선린우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도 다른 미군주둔국가 수준 정도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우리측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다.

이번 협상과정에는 재판권에 대한 불평등 조항의 개선을 비롯 환경권, 근로권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개정이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성명] 독극물 방류사건 계기로 SOFA 철저히 보완 개정되어야 (대변인 브리핑 2000. 7. 16)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명백한 시민 생명 위협행위이고, 간접적 대량 살상미수 사건이다.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이런 짓을 자행했는지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를 확인하고도 미군측이 사실을 숨겨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SOFA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정과 준수 의무가 필히 포함되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 미군측은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함께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4) [논평] 미국측 SOFA 개정안 : 개선 아닌 개악(대변인 브리핑 2000. 7. 11)

독소조항 투성이 인 미국측의 SOFA 개정안 내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개선은커녕 불평등 조항이 더 강화된 개악이다. 수감된 미군 범죄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SOFA 규정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은 미국측이 범죄인 신병과 관련 독단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같다. 경미한 사건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포기 요구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한국의 사법주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다. 이런 식의 접근 태도는 양국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크다. 국민들의 불필요한 반미감정 유발 역시 심히 우려된다. 적어도 다른 미군주둔국 수준의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협상을 통해 불평등 SOFA 협정의 내용을 이번만은 필히 개선토록 해야한다. 정부의 구체적 개선안을

공포하라.

2. 새천년 민주당

1) [성명] SOFA 협정 개정협상에 부쳐(대변인실 2000. 8. 2)

SOFA 협상이 4년만에 재개된다. SOFA 협정은 이제 한미간 '평등협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미군의 형사관할권, 민사소송, 군사 시설 및 기지, 환경, 노무, 검역문제 등 불평등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 양국은 불평등한 SOFA 협정으로 인한 한국국민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상호호혜적인 한미관계에 걸맞는 내용으로 협정을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3. 자민련 : 자료 없음

4. 민주노동당

1) [논평] 주미대사인가, 미국대사인가(양성철 대사 문책촉구 : 대변인실 2000. 9. 25)

주미대사인가, 미국대사인가 양성철 주미대사의 문책을 촉구한다. 양성철 대사는 주미대사인가, 아니면 미국대사인가.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첨예한 쟁점에 대해 양 대사가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양 대사가 미국대사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노근리 문제에 관해 이미 많은 증언과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우니 정치적 타결을 하자는 양 대사의 발언은 누구를 위한 발언인가. SOFA에서 환경 등의 조항을 다루지 않고 그 상위법 격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상식에 벗어난 발언은 또 무엇인가.

애초부터 자격과 자질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양 대사가 계속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대사임기가 끝나면 다시 미국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인물에게 우리 국익을 더 이상 맡겨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2) [논평] 미국 잘 보이려 사고위험 감수하나(매항리 사격장 인천공항 사고위험 : 대변인실 2000. 9. 21)

미국 잘 보이려 사고위험 감수하나 매항리 폐쇄권고 무시, 대미저자세 이해할 수 없다. 매항리 사격장의 비행구역이 인천국제공항의 비행구역과 겹쳐있어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이에 따라 사격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미국방부와 연방항공청의 보고서는 이제 매항리 사격장 폐쇄가 거부할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 받고도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대신 인접한 우리 공군의 훈련 비행구역을 편법으로 이용키로 하는 등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매항리 사격장 유지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조차 사격장 이전을 권고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도대체 '알아서 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태도는 막말로 '부득이 비행사고가 나더라도 미국과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형사고의 위험은 있지만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군의 폭격훈련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발상인 것이다. 우리 공군의 훈련장을 줄여가면서까지 미국에 잘 보이려는 국방부가 소위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거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간 매항리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우리국민의 자주권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매항리 사격장이 더 나아가 인천국제공항에 엄청난 대형사고의 위협마저 주고 있다면 답은 자명하다. 정부는 비에케스와 더불어 세계에 오직 두 곳 밖에 없는 미군의 국제폭격장인 매항리 사격장을 폐쇄하는데 즉각 나서라.

3) [보도자료] 매항리 폭격장 폐쇄 · SOFA전면개정 투쟁선포식 (대변인실 2000. 7. 21)

매항리 폭격장 폐쇄 · SOFA전면개정촉구 민주노동당 투쟁선포식 개최 23일(일) 낮 1시 용산 미8군사령부 앞... 당원 약 800여명 참가

1. 민주노동당은 23일 낮 1시 용산 미8군사령부(국방부 맞은편) 정문 앞에서 '매항리 폭격장 폐쇄와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각종 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탄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2. 집회는 권영길 당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전만규 매항리 주민대책위원장의 연대사, 정치연설과 더불어 문화공연의 순으로 진행되며, 집회 마지막에는 주한미군 사령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집회에는 서울·수도권의 당원들과 학생당원들을 포함하여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3. 최근 독극물 방류사태에서 보듯이 주한미군 범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단지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과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오만한 태도를 바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제대로 개정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아무런 성의있는 조치없이 우리 국민의 높아지는 반미감정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4) [논평] 독극물 방류 사과는 미국정부가 해야 한다(대변인실 2000. 7. 21)

독극물 방류 사과를 미국정부가 해야 한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독극물 무단방류에 관해 서울시에 사과할 뜻을 표명했으나 사과대상과 방식 등의 문제로 결국 연기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사과는 미국정부가 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사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불평등한 SOFA가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과 정도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반발을 살뿐이다. 주한미군은 이번 사태의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독극물 방류의 책임자로서 본인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데 실제 방류한 사람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가해의 책임자가 직접 가해행위에 가담한 사람만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이미 몇 차례 대통령 등이 직접 나서 해외주둔미군범죄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있다. 한강 독극물 방류는 서울시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문제이다. 사과는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해야 한다. 독극물 방류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사과가 없다면 이는 한국을 또 한번 무시하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5) [논평] 주한미군 사령관 사법처리하라(대변인실 2000. 7. 14)

주한미군 사령관 사법처리하라

독극물 방류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이제 매항리, 폭격으로는 부족하여 한강에까지 독극물을 무단 배출하는가. 우리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통한 분노를 참기 어렵다. 미국측이 SOFA개정협상과정에서 주권침해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고 환경문제 등은 전혀 논의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혹시 앞으로 계속 독극물 방류를 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명확히 근거하여 사법 처리하라. 이 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독극물 방류라면 더욱 단호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미국과 주한미군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시행위를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누차 밝혔지만 정부의 존재근거는 국민이다. 또 다시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정부가 비굴하게 행동한다면 그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우리)국민의 정부'라고 생각하겠는가.